

■ 판례 동향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그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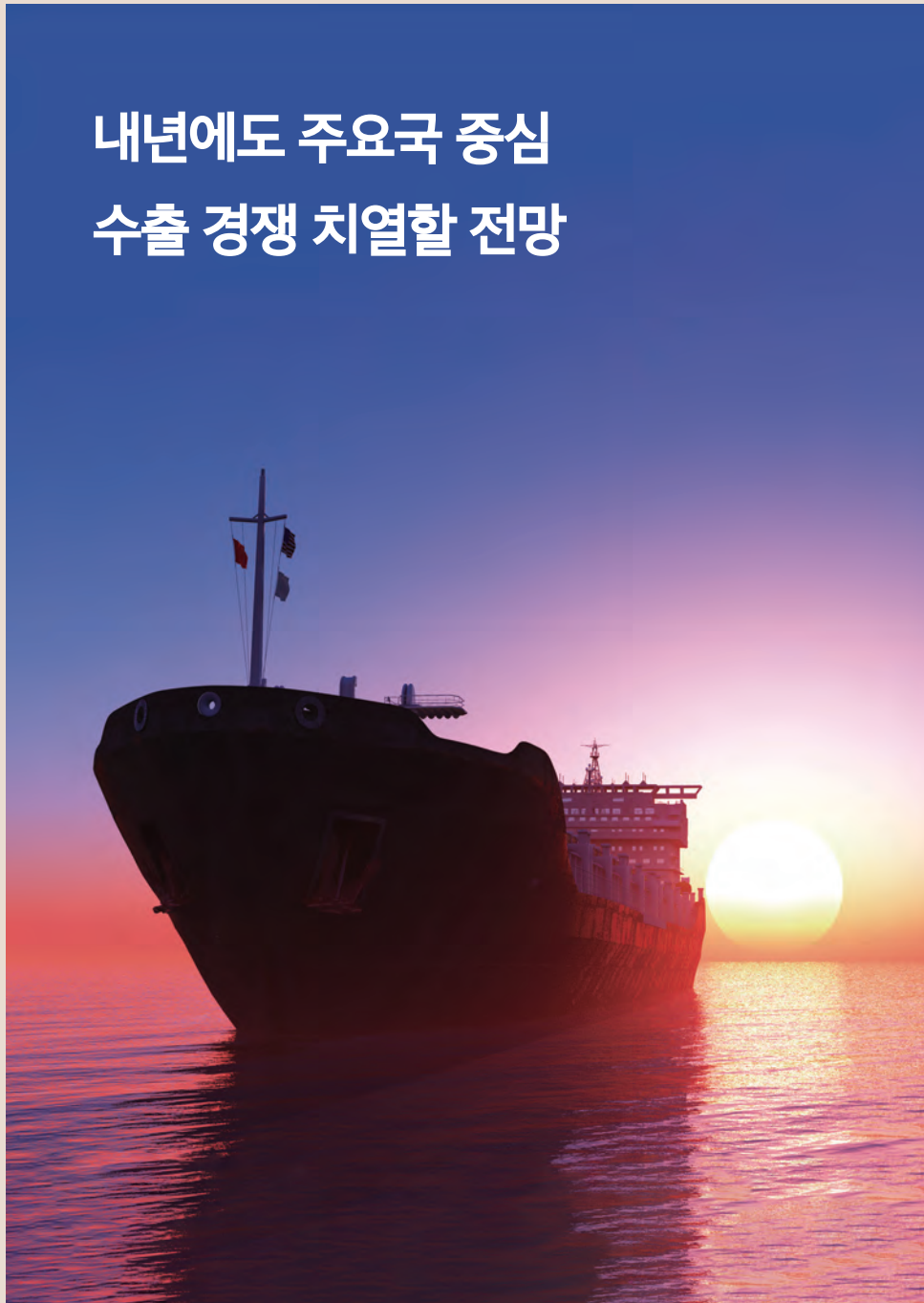
■ 품목분류 동향

식품저장 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검토

■ 개정법령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내년에도 주요국 중심 수출 경쟁 치열할 전망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2월 23일(통권 제2112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내년에도 주요국 중심 수출 경쟁 치열할 전망

06 Weekly News**14 현장특파원****관세행정실무해설**

- 19** **공모전 수상작**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
- 28** **관세행정안내**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 관련 문의
- 35** **질의응답사례**
카드 형태 티켓 등의 HS CODE

관세동향

- 38** **관세판례해설**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그 시점

품목분류동향

- 49** **품목분류해설**
식품저장 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검토
- 54** **품목분류 M.A.P**
유장분말 분류 사례
- 57** **세번 바로잡기**
기타 완구
- 59** **상식 밖의 상품학**
이상기후 현상, AI로 대비한다

최신개정법령

- 62**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65** **공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 73** **입법예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년에도 주요국 중심 수출 경쟁 치열할 전망

10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주요국 간 수출 경쟁 집중될 것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5개년간 각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의료·정밀·광학기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그 뒤로 독일, 미국, 중국 순으로 경쟁이 심했다.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가 해외 시장에서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 및 수출경합도 지수를 기반으로 국가별, 품목별 수출 경쟁 동향을 분석한 '10대 수출 품목의 글로벌 경쟁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위권 국가의 수출경합도는 일본(46.8), 독일(39.8), 미국(39.1), 중국(38.5)로 나타났다.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는 수출구조 유사성지수라고도 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양국 수출 구조가 유사하므로 수출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KOTRA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상위 5개 국가와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이들 국가들 또한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수출 5강 달성을 위해서는 품목별 수출 경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가율(9.5%)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수출액 상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 2024년 3분기, 주요 품목별 日·獨·美·中 간 수출경합도 ●

구 분	한-일		한-독		한-미		한-중	
전 품목	46.8(Δ1.3)	↓	39.8(Δ0.6)	↓	39.1(Δ0.9)	↓	38.5(+0.5)	↑
반도체	53.3(+1.9)	↑	45.4(+4.6)	↑	45.5(+2.7)	↑	72.2(Δ3.1)	↓
자동차·부품	72.5(+5.3)	↑	66.7(Δ1.9)	↓	60.3(+3.9)	↑	52.1(+17.4)	↑↑
선박	88.1(+19.2)	↑↑	22.5(Δ11.8)	↓↓	3.0(Δ4.3)	↓	86.6(+33.3)	↑↑
의료·정밀·광학기기	53.5(Δ2.0)	↓	51.8(+10.7)	↑↑	44.1(+5.4)	↑	51.9(Δ7.1)	↓

팔호는 2019년 대비 2024년 3분기 수출경합도 증감폭(출처 : KOTRA)

수출경합도가 높다는 것은 수출구조가 유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수출구조를 비교한 결과 10대 수출 주력 품목 중 일본은 9개 품목이, 독일, 일본, 중국은 7개 품목이 중복됐다.

일본과 독일은 자동차·부품과 기계류의 수출 비중이 높았고, 미국은 석유제품, 화학공업, 기계류 순으로 수출이 많았으며, 중국은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부품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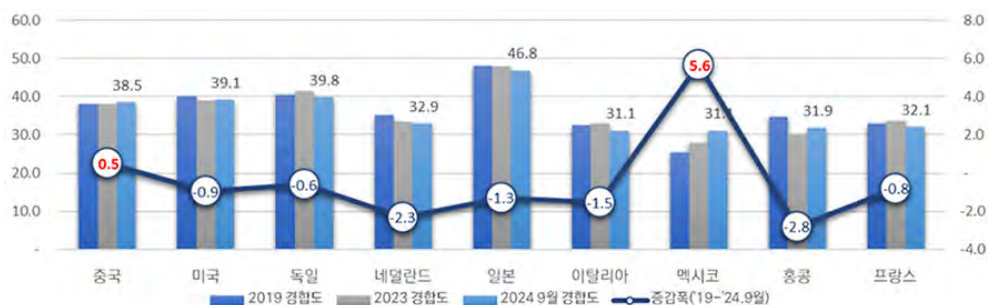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의료·정밀·광학기기의 수출 경쟁이 가장 심했다. 품목별 10대 수출국과의 수출경합도 추이를 보면, 한국은 반도체 및 의료·정밀·광학기기에서는 8개국과 수출경합도가 상승했고 자동차·부품에서는 7개국과의 경합도가 상승했다. 선박 부문에서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 인도 등 4개국과의 경합도가 상승했는데, 韓·中, 韓·日 간 경합도 상승폭은 10대 품목 중 선박이 가장 컸다.

2024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주력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공업, 석유제품, 철강·비철금속, 플라스틱, 선박, 의료·정밀·광학기기 순으로 수출액이 높았다.

한편, 기계류, 전기·전자, 플라스틱, 고무 등 제조업의 수출경합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철강·비철금속에서는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해 韓·中 경합도가 상승했으며, 화학공업 제품에서는 중국과 프랑스, 석유제품 부문에서는 인도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멕시코를 제외한 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의 수출경합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수출 경쟁 수준이 완화됐다기보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일부 핵심 산업으로 경쟁이 집중되는 한편, 멕시코 및 동남아 등으로 제조 생산 거점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한국과 멕시코 간 수출경합도는 1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 2019년~2024년 3분기, 10대 수출국의 對한국 수출경합도(억 달러/%) ●



(출처 : KOTRA)

KOTRA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강국들이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은 내년에도 주요국의 수출 경쟁이 집중될 것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전략을, 선박 품목에서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다각도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미국 신정부와 한국과의 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정밀·광학기기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절반(56.7%)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6% 수준으로 낮아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美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관련해 예상 시나리오를 수립해 우리 기업의 對美 수출 경쟁력 확보, 공급망 다변화, 수출처 다변화, 제3국 생산기지 이전과 리쇼어링 등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KOTRA는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식품 수출기업 ‘안전인증 중복’ 없앤다… 내년 시범사업 시행

산업부·식약처,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1년간 시행 후 제도화 검토

내년부터 식품 수출기업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중복 운영·심사하면서 겪었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그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운영하더라도 수출 시에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심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해왔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기관은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 등 총 4곳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 심사 정보에는 GFSI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 분기별 보고, 부적합 시 즉시 보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현재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약 1,600개 HACCP 적용 수출 업체 중 시범사업 기관 4곳에서 GFSI 규격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 내년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업체 부담은 해소하고 K-푸드 수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중국産 냉동부세, 에톡시퀸 잇달아 검출 …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민어과에 속하는 어류 ‘냉동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産 냉동부세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에톡시퀸은 사료의 지방 산패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명령이 시행되면 중국産 냉동부세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에톡시퀸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내년 5월까지 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적”

중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료 원자재로 쓰이는 인산이암모늄(DAP)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급대란 우려가 일자 정부가 가격 및 재고현황 점검과 함께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11월 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 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 톤, 인산이암모늄 4만 톤, 염화칼륨 8만 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産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비료업체 확인 결과 계약을 체결한 인산이암모늄 6,000톤은 12월 말까지 문제 없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통관 과정에서 지연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인산이암모늄 수급 문제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원활한 원료 조달을 위해 모로코,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필요 시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 정세, 환율 상승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료 원료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매주 원료 수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美 상무부, “韓 값싼 전기요금 보조금 아니다” 판정

美 국제무역법원 소송서 1차 승소로 철강업계 상계관세 부과 제동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현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17일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mm 이상 철판)에 대해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물릴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작년 11월 제소해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그룹화, grouping)과 관련,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broadly available and widely used)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 측 논리를 수용했다. 즉,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또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산업 간 공통된 특성(shared characteristics)을 제시해야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현지 진출기업 세부담 10%로 줄어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2월 19일 발효돼 르완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최대 15%에서 10%로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13일 한·르완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올해 11월 완료됨에 따라 12월 19일 정식 발효를 했다고 밝혔다.

르완다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업소득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진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및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된다.

또 이번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 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돼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회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 중국·대만産 석유수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대만産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또 중국産 차아황산소다 덤핑 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

무역위원회는 12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대만産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4.45 ~ 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중국産 차아황산소다, 태국産 파티클보드 덤핑조사,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는 올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EU도 美처럼 경제안보 강화 '韓 수출기업 주의보'

무역협회, “對中 제재 간접 영향 유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환경·인권보다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월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2기 EU 집행위는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1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가 환경·인권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다소 상반된 움직임이다.

우선 2기 집행위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 전환하고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으로 공공조달에서 역내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며 친환경 제품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풍력산업에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안보 위협, 역내 시장 왜곡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역외보조금규정(FSR), ▲수출 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EU 역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유럽산 사용’ 조건 제시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EU의 對中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의 EU 역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장벽은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저가 브랜드가 시장을 잠식하는 데다 중국 투자 생산시설의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집행위는 중국 기업 투자 시 역내산 부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무역협회는 EU의 對중국 무역·투자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처럼 고율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EU의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는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 신설·증설을 진행 중인 이차전지 등 관련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EU가 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해운물류 산업 디지털 전환 이끄는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격상

민간등록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이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된다.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12월 18일 스마트항만 조성 등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2021년 울산항만공사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해오다 올해 4월 자격의 공신력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을 신청,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부가 국가공인을 최종 결정했다.

현재 5회의 검정을 통해 배출된 합격자는 557명으로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민간등록 자격 취득자에 대한 공인자격 전환계획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추진계획을 마련해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smac.co.kr)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자격 취득자에 대한 채용·승진 시 가점 인정, 대학교 학점인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의 국가공인을 계기로 우수한 융합인재가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통해 항만경쟁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군산항과 장항항은 양곡, 자동차, 잡화 등 매년 약 2,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해권 물류·산업 거점항만으로, 이들 항만은 선박이 통하는 항로 구간과 접안하는 선석 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매몰돼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투기장이 20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다.

신규로 조성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2029년까지 국비 5,476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이 건설된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2040년까지 24톤 트럭 227만 대 분량인 약 3,862만㎥ 규모의 준설토 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28년 투기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완공 시점인 2029년 보다 1년 앞서 외곽호안을 먼저 완성해 준설토 처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2040년에 해당 투기장에 준설토 수용이 완료되면, 군산항에 여의도 면적의 절반인 약 214만 6,000㎡의 항만부지가 공급된다. 해수부는 군산항의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항만물류부지 등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국내 정치상황 불안정으로 피해 입어

주요 피해 사례로 ‘계약 지연 및 취소’,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꼽혀

최근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긴급실태 조사 결과를 12월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26.3%였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47.4%)’,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23.0%)’,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22.2%)’ 등이었다.

또한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였으며, ‘없다’는 응답이 36.5%였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 소재 A업체는 “회사를 방문해 계약 및 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바이어가 12월 3일 이후 불안정한 상황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후 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현재 발생한 위약금 지불은 1개 업체뿐이지만 다른 바이어들도 계속 문의 전화를 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와 같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의 예상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가 49.3%로 가장 높았으며, ‘1~2년 간 지속(32.2%)’, ‘2년 이상 장기화(8.2%)’, ‘올해까지만 지속(7.4%)’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는 ‘국내 상황에 문제 없음을 적극 해명’이 51.7%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바이어 발굴 노력(13.3%)’, ‘피해를 감수하고 계약 대안 제시(8.8%)’ 등이 뒤를 이었으나 ‘마땅한 대응책 없음’도 25.5%에 달했다.

정부가 현재 상황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국가 대외 신인도 회복 방안 마련(74.7%)’, ‘환율 안정화 정책 마련(55.2%)’,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가 각각 34.9%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국가 신뢰도 및 이미지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여파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힘든 상황으로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며, “급격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중소기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공개

2억 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월 18일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법인 59개)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인원은 4명 줄었고 체납액은 95억 원 늘었다. 특히 체납액 100억 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 22억 원으로 전체 79%에 달했다. 가령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 참깨에 대해 저세율(40%)이 적용되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 낙찰받아 통관·판매한 A씨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해 9,083억 원을 체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기관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연계해 활동을 제약받게 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알리, ‘해외 직구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 업무협약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식물이 불법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우편·택송을 통한 수입 금지품 검역 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동·축산물은 1만 7,000건에서 2023년 2만 4,000건으로, 식물은 2021년 1만 건에서 2023년 2만 1,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는 등 해외 직구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수입신고도 안한 일반 텀블러가 스타벅스 텀블러로 둔갑

일반 텀블러와 수저, 포크 등을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제품으로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씨 등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부터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일반 텀블러 등을 불법 반입한 뒤 브랜드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온라인 쇼핑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 원 상당을 유통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규모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로 물류도 비상

대한상의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서 물류 대변화 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약 한 달 남겨둔 가운데 해상운송 운임비가 오르고 선박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12일 개최한 '트럼프 2.0 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2025년 1월 미국 항만노조가 파업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부과,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해상운송 수요와 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다.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물류기업 대표들과 물류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더 만만치 않다”고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류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미국 항만노조 협상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조업체들의 완제품 밀어내기 선적(Front Loading)이 증가해 운임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겸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위원장은 “물류시장 자체가 경색돼 있다. 국내 물류시장 또한 성장률이 정체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노믹스 2기 키워드 : 보호무역주의, 신자유주의, 반환경주의

현대경제정책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2025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美·中 무역전쟁에 따른 교역 부진,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강 가능성을 지목했다. 세계 경제의 교역탄성치는 세계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데 교역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그런데 이 세계 교역탄성치가 2023년 1.3p에서 2024년 0.9p로 하락했고 2025년에는 0.7p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동일한 3.2%로 내다봤다.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5.2%대였지만, 2025년에는 4.5%(2024년 4.8%)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도 중국의 대응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노믹스 2기는 보호무역주의, 신자유주의, 반환경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도 '관세'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관세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목표다. 관세로 대두되는 통상정책으로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유리한 방향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주원 현대경제정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美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對中 수출규모는 1,478억 달러이며, 중국의 對美 수출규모는 4,272억 달러다.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는 △2,794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1조 650억 달러)의 26%를 차지한다. 미국의 주요 시장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순이다. 한국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조치로 한국은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감소했다. 2017년 15.8%를 기록한 수출증가율은 2018년 5.4%, 2019년 △10.4%로 떨어졌고, 對中 수출증가율은 2017년 14.2%, 2018년 14.1%에서 2019년 △16.0%로 떨어졌다. 트럼프가 내건 對中 60%, 對세계 10% 관세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수출은 143억~191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원 실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주요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하도록 유인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고품질 제품 미국서 생산하는 시대 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전 포인트로 “기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강한 멘트를 먼저 꺼낸 뒤 추후 합의하며 어떤 이익을 취하는지”라고 지목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는 중국과 완전히 결별할 분위기이지만, 과연 실제로 그렇게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년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부활하고 상품 단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對中, 對멕시코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이 중국, 멕시코로부터 상당수의 물품을 수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결국 자국 내 상황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 공급망과 미국의 물류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대선 이후 미국 내 물류 투자 거점은 동부 위주로 변화할 전망이다. 동부에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항만이 압도적으로 많아 선택의 폭도 넓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또 있다. 항만 인프라의 현실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신경을 많이 쓴 것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인프라 투자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 멕시코 국경 쪽 물량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연안지역이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및 국내 내수시장과 동북아 역내 물동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기업의 북미 투자는 증가하고 북미시장 역내 물동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류산업의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다. 전통적인 중소 물류기업은 소멸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화 물류기업이 부각될 것이다.

이 센터장은 아시아에서 물건을 제조한 뒤 미국에 판매하는 생산축 자체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저가제품 생산은 멕시코에서, 고품질 제품 생산은 미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달리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 와야 하고 결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센터장은 특히 물류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공급망 및 물류 리스크가 커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반면, 아직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양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업은 ‘양보다 질’이란 개념의 첨단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FTZ, 위험물, 콜드체인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정부는 서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도 눈을 돌려 무역 다변화

정책을 지원하고 현지 물류인프라를 위해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 기존 개념 벗어나 '융복합 물류' 부각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연주 물류연구본부장은 '물류시장 동향 및 2025년 전망' 발표에서 "물류는 더 이상 짐을 나르는 산업이 아니다. 디지털경제·서비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융복합 물류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 본부장은 물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른다'는 기존 개념에 멈춘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시설운영 및 생활물류 등의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물류 또한 B2B 산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국내 물류시장에 대해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지난 10년간 물류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7.4%씩 성장해 왔다"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산업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운시장 전망 강연에 나선 삼성 SDS의 배동훈 그룹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운임지수(SCFI)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반등했다(2020년 대비 101% 높은 수준). 2024년 해상 수요 및 공급 증가율 격차는 4.9%p까지 벌어졌다.

2025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4년 대비 2.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인도 대륙(7.5%), 아시아 역내(3.3%) 성장은 견고할 것이며, 특히 트럼프 재선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전 조기 선적 수요로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 해상운임 또한 트럼프 2기 초반(2025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당시 관세 부과 계획 발표(2018년 3월)부터 3차에 걸친 對中 관세 발효까지 운임이 급등한 바 있다. 다만 마지막 4차 관세 발효(2019년 1월) 이후에는 운임 변동에 영향이 미미했다.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추이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한국관세물류협회)

배 그룹장은 “중국발 물동량은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초반 증가하겠지만 결국 과잉재고로 수요가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에도 관세 발효 전 선적이 집중되면서 중국 물동 비중이 약 50%까지 상승했지만, 기계·전자기기 등 관세 영향을 받은 업종은 2017년 대비 2019년 수입 규모가 평균 7% 축소됐다.

배 그룹장은 “트럼프의 새로운 질서에 글로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수출입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해운시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美 동부 항만노조 파업도 고려해야 할 이슈다. 지난 10월 1일, 14개 항구·35개 항만시설 운영이 일제히 중단됐다. 노사 간 6년간 임금 62%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은 3일만에 종료됐지만, 항만 자동화에 대한 온도차가 뚜렷한 탓에 재파업의 우려는 여전하다. 재협상 기한이 2025년 1월로 중국의 춘절과 맞물려 사전에 선복 확보와 관련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트럼프 2기 주요 공급망 리스크 ●

주요 일정	공급망 리스크
美 항만노조 협상시한 만료(1. 15.)	항만노조 재파업
트럼프 취임(1. 20.)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중국 10% 추가 관세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중국 춘절(1. 28.~2. 4.)	휴가기간 도래 전 물량 처리

‘항공시장 전망’ 강연에 나선 LX판토스 엄승준 항공 MI 팀장도 “내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예고로 인해 북미항 항공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탈중국화에 따른 공급망 다각화로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소비시장인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항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항공수요 흐름이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연자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유통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관세인상을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을 상대로 취임 첫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SNS에 업로드하자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의 자택을 전격 방문했으며,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은 긴급 통화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자 각국의 외교전이 일찌감치 숨가쁘게 시작된 모양새다.

박 상근부회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내년 물류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선복량 확보, 물류바우처 지급, 물류인프라 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대상 작
(판례평석)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은 매년 관련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본지는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작 3편 중 관세평가를 제외한 품목분류, 판례평석 2편의 대상작을 요약·정리해 2주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판례평석 부문 대상작에 대해 소개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

<행정법원 2017구합78537(2018. 11. 29.)>

<서울고등법원 2018누78307(2019. 9. 25.)>

<대법원 2019두55781(2023. 8. 31.)>

김 지 우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 소 정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I. 서론

「관세법」 제188조는 관세청의 작업에 대한 관리로 통관 질서를 유지하고 부분적 제품과세로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세법」 제188조의 단서 조항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의 시점이 혼용작업 이전인지, 아니면 작업 개시 이후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평석의 사건도 이러한 해석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평석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관세법」 제188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 시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평석의 사건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례인 2017구합78480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쟁점에 대해 판결 결과가 다르게 도출된 이유를 규명하고 해당 판례가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평석에서는 단서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단서 규정의 문언적 결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관세법」 제188조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판결 개요

원고는 진공기기, 진공장치,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다. 원고는 국내 업체 및 일본 UOOOO사로부터 내·외국원재료를 공급받아 자체 보세공장에서 2010. 12. 6.부터 2013. 3. 19.까지 혼용작업을 통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이하 ‘이 사건의 물품’)를 생산했다.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에 따르면 부분적 제품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관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승인)서(이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도 이 사건의 물품에 부분적 제품과세를 받기 위해 기간 등 신청서에 기록해 제출해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신청서상 실제 보세작업기간을 누락해 다르게 기록했다. 원고는 이후 누락한 작업기간까지 부분적 과세를 적용해 외국물품인 원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수입신고를 했다.

대상판결의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78537 판결)에서는 승인의 시점과 상관없이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반면, 고등법원 판결(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0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며, 사전승인이라는 부분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III. 유사 판례 분석

대상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537 판결과 유사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의 다른 판결(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7구합77480 판결)이 주목된다. 두 판결은 같은 행정법원 내에서 2개월 사이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과,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심리 불속행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비해,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전승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앞선 판결은 사전심사가 기각돼 내국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선고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법원의 다른 판결에서는 혼용승인 시점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유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을 했고, 대상 판례 또한 대법원이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을 최초로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러한 판결의 변동은 「관세법」 제188조 규정의 해석이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납세자의 과세에 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동일한 법원 내에서도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을 비교해 법적 쟁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V. 판결 쟁점

이 판결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혼용승인을 사전에 받아야만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를 제1설(이하 ‘혼용작업 사전승인 필요설’이라 한다), “혼용승인을 사후에 받더라도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를 제2설(이하 ‘혼용작업 사후승인 포함설’이라 한다)로 규정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480 판결은 제2설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제1설을 취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혼용승인의 범위에 대해 최초로 명시한 판결로, 향후 혼용작업이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판결이므로 제1설을 원칙으로 하되, 제2설을 토대로 보완점을 모색하겠다.

1) 법적해석방법론 : 문언의 충실한 해석 vs 구체적 타당성

대법원은 법 해석에 있어서 문언 중심의 해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개별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의 의도를 반영하는 목적론적 해석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법률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즉, 법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법질서 등 다양한 요소가 부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

제1설의 입장에 선 판결은 유사한 법과의 관계, 입법체계를 고려해 문언중심적 해석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취지나 법률효과가 유사한 법령들이 사전승인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본 사건에 적용되는 「관세법」 제188조 또한 사전승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법제처,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 2006. 10.

제2설의 경우 기업에 세금 면세를 하는 것이 권한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언중심적 해석론을 채택하되 실제 입법취지와 의도의 구체적 타당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관세법」 제188조 단서 조항은 기업부담 완화제도의 일부로서 관세에서 기업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나 현재 조항은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타당성이 상충하는 해석이 존재하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타당성**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입법취지 : 통관절서 유지 vs 기업의 실질

(1) 통관절서 유지 vs 기업의 실질

법률의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설의 경우 보세공장제도의 입법취지를 통관절서를 유지하는 것에 두고, 제2설은 일률적인 과세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세공장은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가 이뤄지기 전 과세를 보류해 가공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따라서 납세가 유보된 외국물품들과 가공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통관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설은 보세공장의 설립목적과 복잡한 반출입 절차를 고려할 때,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세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그렇다면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관세청에서 규정한 기업부담 완화제도에는 혼용승인 제도, 관세환급, 관세 분할납부 대상,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해외통관 애로 해소, 관세조사 유예²⁾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제도를 살펴보면, 통관절차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를 통해 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혼용승인제도의 주요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설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내국원재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함을 지적한다.

(2)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구체적인 법의 입법취지를 통해 살펴보자면, 제품과세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원료과

2) 관세청, '관세청>수출입통관>수입통관>기업부담완화제도'

[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mi=2843(검색일 : 2024. 10. 9.)]

세와 부분적 제품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고 있다. 원료과세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사용신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납세자에게 관세부담을 줄여준다. 부분적 제품과세 역시 내국물품인 원재료 및 부가가치가 관세에까지 포함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료과세는 일반물품과 달리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하기에 원재료의 성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승인 신청절차를 통해 재료의 성상을 파악해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분적 제품과세 또한 완성된 혼용제품 중 외국원재료의 가격에 상응하는 비율을 산정해 관세를 부여한다. 제1설에서는 혼용해 완성된 제품의 형상만으로 원재료의 투입비율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부분적 제품과세의 경우에도 원료과세와 마찬가지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제2설에서는 사후에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등 사후적으로 원재료의 투입 비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후승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제품과세 또한 원재료의 성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를 내국물품 혼용승인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다만, 합리적인 과세산정을 위해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률적인 관세 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3) 실무적 부분 : 관세고권의 효력과 혼용승인 절차

(1) 관세고권의 효력

관세고권의 범위를 통해 실무적으로 어떤 물품이 관리·감독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관세고권³⁾이란 국가가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관세고권이 적용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반입한 사람은 해당 물품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세관 감시의 주요 목적은 관세 및 수입세금의 확보, 통관 법규 준수, 그리고 밀수 및 수출입 제한 품목의 단속이다. 따라서 관세의 관리·감독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혼합 제품의 법적지위가 문제가 된다. 즉, 혼합 제품이 외국물품으로 간주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간주될 것인지가 쟁점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혼합제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승인을 받은 경우 부분적 제품과세제도를 통해 제품 중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3) 국가가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관세고권(Zollhoheit)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고권이 발동될 수 있거나 관세고권에 따른 관세채권의 확보에 수반되는 「관세법」상 절차적 법규가 적용되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관세영역(Zollgebiet)이라 한다.

비율만 외국물품으로 취급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⁴⁾ 제1설은 이때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봐 제품과세의 예외적 조항에 사전승인을 규정하는 이유는 기업에 자율적 관리를 부여하되 사전승인이라는 절차로 관세청의 관리·감독하에 뒤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를 부여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제2설은 기존의 관세고권의 범위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혼합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세고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판례평석에 있어서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혼용승인 절차

실제 관세청에서 명시한 혼용승인 절차에 따르면, 외국원재료를 수입해 오면 보세운송을 통해 ‘수입’을 하고 반입신고를 한 뒤 사용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을 사용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으로서는 제1설이 실무적인 부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공장에 물품이 반입되는 순간 해당 물품은 세관장의 관리·감독 영역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사전, 사후 등 전반에 걸친 관세조사(정기감사, 비정기감사)를 시행하고, 보세공장 내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해 수출입 화물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한다. 관세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구분돼 수출입 행위 전반을 점검한다.⁵⁾ 즉, 사전에 신청서에 혼용물품이 기재돼 있어야 세관의 관리·감독에 들어간다는 제1설의 주장은 합당해 보인다.

반면 제2설은 사후 검증에도 사용신고 이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기업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

실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전에 물품을 기재해야 할 듯 보이나, 사후관리 절차가 잘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예외조항을 통해 융통성 있는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법률요건과 증명책임 : 미기재 vs 승인일 이전 기재

(1) 법률요건분류설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더라도 관세청이 기업의 실질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관리·감독을 관세조사나 일련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한 범위에 기대야 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관리·감독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영역이 있다.

4) 관세법인 화우_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보세공장 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76-80면

5) 단,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AEO 기업의 경우 종합심사로 진행한다.

특히 관세평가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격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증명책임의 합리적 분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법적요건을 확인해 이 사건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⁶⁾

대법원에서는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서 당사자가 구성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을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함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해당해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관세청에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장이 일차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 예외적인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이차적인 증명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제1설은 과세관청이 일차적인 증명책임을 충족했고, 이차적인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간다고 판단한다. 반면 제2설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행위가 법적요건에 위배되는지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증명을 할 때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법적요건을 확인해 최종적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제1설과 제2설 모두 법적요건에 ‘승인’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해석에 차이가 있다. 제1설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 소정의 ‘세관장의 승인’은 대상물품에 대한 부분적 제품과세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혼용승인의 요건, 작업기간 누락 여부보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그 작업기간 동안 혼용승인을 받고 작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증명책임과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은 그 작업기간 동안 혼용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했다는 것을 우선 증명함으로써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후 납세자는 혼용승인을 받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할 이차적인 증명책임이 있다. 제2설은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승인의 요건에 작업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후승인을 포함한다. 과세관청은 혼용승인의 시점과 상관없이 혼용승인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실무적 부분에서 봤듯이 관세청의 관리·감독의 영역 안에 들기 위해서는 작업기간의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다. 이는 관세청과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 대부분 기업의 성실한 납부신고에 기대 관세행정을 행하고 있으므로 제1설의 법률요건이 합리적이라고 볼

6) 김재식, <관세가격 평가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방안 연구>, 2012. 11., 88-105면.

수 있다. 따라서 제1설의 근거대로 원고는 작업기간을 누락해 승인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률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그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V. 입법적 개선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의 ‘세관장의 승인’은 사전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세공장제도 관련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는 추세다.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점차 줄이는 관세청의 최근 흐름 속에서 사전승인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본 평석은 부분적 제품과세를 받기 위해 사전승인만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본 평석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과 관련해 부분적 제품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공휴일이나 야간, 계약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의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한 증명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법」 제188조의 단서 규정은 본 평석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봐 사전승인인지 사후승인인지 해석상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사전승인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에 ‘미리’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개선안

- ①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 혼용비율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공휴일 또는 야간의 경우
 3. 계약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앞서 말한 최근 보세공장 동향과 더불어 「관세법」의 목적, 실무적 필요성,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관세법」 제1조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승인만 허용할 경우, 관세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보다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승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사전승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세청이 작업 개시 전에 해당 작업을 인지하게 해 관리·감독하에 두는 통관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관세를 적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가치와 통관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해야 한다는 두 가치는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후승인도 허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분적 제품과세를 받기 위해 사전승인과 더불어 제한적 사후승인이 요구되는 근거는 실무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무역계약 취소 및 변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⁷⁾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해 보세공장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했으나, 외국 기업과 무역계약이 취소 혹은 변경돼 국내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혼용작업 개시 전에 혼용승인신청서를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는 무역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세계 무역 동향을 감안할 때 계약이 취소 및 변경되리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본 평석은 기업과 관세청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해 기업이 증명책임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관세정보보다 기업이 작업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⁸⁾ 기업이 관세정보보다 작업에 대해 정밀하게 알고 있으므로 작업이 올바르게 진행됐다고 증명하는 것은 관세정보보다 기업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후승인이 이뤄질 경우 관세청의 기업 작업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기업의 작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관세청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사전승인과 함께 제한적인 사후승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관세청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7) 권문현, ‘보세工場製品의 輸入關稅適用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년

8) 김재식, 앞의 논문, 88-105면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 관련 문의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
질문	품목분류 변경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데 그 기한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일)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2. FTA 적용 요건

우리나라는 현재 21건,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돼 있고, 추가적으로 한·필리핀 FTA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상품무역 협정에서 FTA 적용 목적은 FTA 특혜관세에 목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제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원산지 상품 요건).

다만, 한국산 또는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됐다고 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넓게 봤을 때 원산지 상품 요건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순서대로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 ④ 절차 요건, ⑤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이 그것이며, 그중 ④ 절차 요건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하는 것(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이 요건이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수입관세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이유로, 더 나아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 당시 또는 사후에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를 통해 수입관세당국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세관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3.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물품 수입 시에 FTA를 적용하면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FTA

특혜관세 적용은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해당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FTA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이라고 하며, 수입통관 시에 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 외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법)」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6조의 각 조항은 모두 유의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의미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6조의 제2호 및 제3호는 검토의 실익이 있다.

먼저 제2호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에 대한 요건은 FTA는 협정상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대국 원산지 상품’이 기본관세에 우선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즉,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지, 우리나라의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중 및 한·EU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한·중국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2.5조(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례도 존재한다.

질문	미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가 'KR'로 기재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수입 시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FTA 관세법」 제6조 제3호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은 수입통관 시(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또는 수입통관 후(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즉,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FTA 관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는데, 수입신고 시 FTA 적용 관련 내용이 제8조,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용의 절차를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원칙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FTA 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이로 인해 수입신고 당시 미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해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했다(시행 2009. 1. 26.)(법률 제92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다만 FTA 사후적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수출 시 각 국가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의 차이도 있고 FTA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 수입통관 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사후적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대표적인 협정은 한·중 FTA다. 중국은 수입통관 당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보충신고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 시 의사표시를 통해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FTA 사후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협정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해당되는데, 인도네시아는 FTA 사후적용에 대한 소급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한 예외사항은 현재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규정만 존재한다. 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품목분류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구분	「FTA 관세법」	내용
협정관세 적용 원칙	제8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적용 예외 : 사후적용	제9조 제1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후적용의 예외	제9조 제2항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45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 적용과 관련해 과거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법령상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수입자는 그후 어떤 사유가 있어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 재적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번호	조심2020관0081(2020. 9. 16.)
제목	이 건 경정청구를 한·ASEAN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FTA 관세법」은 협정관세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사후적용 받은 후 수정신고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다시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이 건 경정청구가 제기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였을 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FTA 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동 수입자는 동 법 제9조 제1항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대한 범위와 업무 처리 절차를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규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내역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기재부의 유권해석 및 관세청의 지침 제정에도 불구하고 「FTA 관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여전히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해석에 있어 기재부의 유권해석 및 관세청의 지침과 정반대의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유권해석 및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FTA 관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관세법령 외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예외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국내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협정상 예외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외 적용 가능 여부는 협정별로 상이할 것이나 인정범위가 상당히 좁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EU 측 수출자의 파업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발급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파업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4. 질문 & 답변에 대한 해석

질문의 내용은 품목분류 변경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그 기한에 대한 것으로, 이는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경정) 또는 제39조 제2항(부과고지)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일)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FTA 사후적용은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HS CODE 변경으로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추정)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후라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발급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으로 인해 해당 규정 적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2019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Q. 협정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데, 새로 도입되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기한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기관발급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없으므로 도입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발급 협정을 소급발급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HS CODE 변경으로 세액 경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소급발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약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됐는데도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번호	조심 2021관0050(결정일자 : 2021. 12. 27.)
제목	이 건 결정청구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ASEAN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선적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모두 쟁점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특혜관세의 목적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러한 조세심판 사례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을 넘겨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 자체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발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발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실익이 있으며, 특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모두 가능하므로 자율발급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CEP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RCEP 협정 제3.17조(원산지증명서)에,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 협정 제3.18조(원산지 신고서)에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에 대해 협정 제3.17조 제8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가 규정(선적일 후 1년 이내 소급발급)돼 있는데,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자율발급)에는 딱히 발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율발급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에는 발급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자율발급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에도 작성에 대한 발급시기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제3.16조(원산지 증명)에 규정하거나 제3.18조에 별도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사유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실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보다 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발급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출당사국에서의 재발급(정정발급) 절차가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변경된 HS CODE에 따른 원산지판정 절차가 다시 이뤄진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들은 실제 FTA 사후적용에 관한 요건이 단순히 「FTA 관세법」 제9조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출당사국의 법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카드 형태 티켓 등의 HS CODE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 형태의 리프트권, 콘서트 티켓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에 해당된다면 제4911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의 ‘기타(서화·디자인·사진 제외)’에 해당된다면 제4911.99-0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491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위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류 총설에서 “아래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 … <중략> …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91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오락장(예 : 영화·연극·음악회)입장 티켓(ticket)·공공이나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과 그 밖의 유사한 티켓”을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입통관 /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사업자물품이 실수로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다시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통관이 완료된 목록통관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라 일부 물품(사업자물품이 착오로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경우 등)의 경우

사유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특수통관 / 호신용 스프레이 통관 가능 여부

경찰서에서 가스분사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가스분사형 호신용 스프레이를 해외 직접 구매(직구)할 수 있을까요?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고 분류된 품목번호로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main.do) >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042-714-7535)

■ 품목번호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 방법

-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 ※ 인천공항세관 특수통관 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 담당)

문의하신 물품이 경찰청 허가 대상인지 정확한 것은 소관기관(경찰청)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 경찰청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 / 인천 032-455-2347

수출 / DDP 조건 수출 시 관세 부담

**수입한 물품이 작동되지 않아 판매처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 물품 재발송 요청을 했습니다.
DDP 조건인 경우 관세 부담은 어느 쪽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시 상대국에서 세관 기준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무역 관련 거래조건은 거래의 당사자 사인 간에 거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로 세금을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세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DDP 조건(Delivery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관세 및 부가세까지 모두 매도자(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제반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판매처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 / 스페인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문의

**스페인에서 와인을 수입하는데, REX 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으로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REX는 EU의 등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로 유럽 수출업자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EU FTA와는 무관한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그 시점

이 정 완 |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I. 처분의 경위 및 사건 경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미합중국에 있는 이 사건 수출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수출업체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 은 등을 원재료로 해 반지, 목걸이 등의 귀금속 제품을 제조해 다시 이 사건 수출업체에게 수출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관세법」 위반 범죄사실로 인한 형사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벌금, 추징의 선고유예 판결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원고)은 금 제품 가공업을 하면서, 이 사건 수출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 금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원재료인 금 알갱이(Gold Grain)를 위 회사로부터 수입하면서 2015. 2.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7.까지 ○○회에 걸쳐서 금 알갱이 합계 △△△그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시가 ○○○○원 상당(물품원가 □□□□원)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

다. 피고는 2019.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수입신고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중량에 뉴욕상품거래소의 국제 금 시세를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2. 사건 경과

가. 원고는 2019.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위 청구를 기각했다.

나. 원고는 2020. 2.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1) 인천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정16 판결

법원은 2020.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²⁾을 했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인 2020. 10. 이 사건 처분 중 관세 가산세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0.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가산세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판결³⁾을 했다.

마.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해 대상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II. 관계 법령

■ 舊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에서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중략> …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인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구합50359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58955 판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42조(가산세)

-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text{해당 관세액} \times \text{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text{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중략> ...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2조(몰수·추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 <중략> ...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III. 대상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뤄진 점, 원고에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선고유예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제척기간 이내에 이뤄졌고, 원고는 편의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형사 판결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고,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1)

밀수입죄의 경우, 통상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밀수품 자체를 압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형법」 제60조에 정한 선고유예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 유예된 기간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향후 원고에게 「형법」 제61조에 정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

○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판결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각 일자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②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판결 후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규정은 법 어디에도 없고, 다만 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에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의 경우 선고유예 확정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형법」 제61조에 정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 원고의 주장 (2)

원고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가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하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소장에서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식으로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전혀 납부할 필요도 없고 수입 원자재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후 원고가 이를 가공하여 이 사건 수출업체로 수출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전액 환급받기 때문에 세관에 적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편의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 (3)

피고는 과세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였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36조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중량에 뉴욕상품 거래소의 국제 금 시세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위 과세가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일람표의 '수입원가'란 각 기재 금액과 동일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국제 금 시세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실시하여 원고로서도 과세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이 사건 처분서에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조문이나 결정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항소심 판결

앞서 사건 경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2020. 10. 이 사건 처분 중 관세 가산세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5. 12. 15. 법률 제13546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42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을 신설했고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는 2016. 1. 1. 이전에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관한 가산세가 포함돼 있었고 이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취소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해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IV. 판례 해설

1.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의 조세채무 성립과 확정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과세가 가능하려면 먼저 과세대상인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의 부담주체가 될 '납세의무자'가 특정돼야 하며, 조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특정돼야 그 세액이 정해진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이고, 그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납세의무자와 세율은 「관세법」 제19조와 제49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 과세요건이 갖춰지면 그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예외적으로 제39조의 부과고지 방식을 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고지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관한 부분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다. 즉, 관세법령에서 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물품은 수입된 때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세관장의 부과고지를 통해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 「관세법」 제39조 제1항 부과고지 물품 ●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 건설 시설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 반입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로 부과고지 방식은 수입신고를 전제로 한 신고납부 방식에 대비되는 세액 확정절차이기는 하나, 법령에서 신고 생략 대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제27조의 가격신고를 해야 한다.

2.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이때의 신고사항으로 포장의 종류, 원산지,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등에 대해 위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제1항 각 호에서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번호,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 등 증명서류 등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의 경우 「관세법」 제25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① 수입신고 우편물, ② 간이 우편물, ③ 현장과세 우편물, ④ 현장면세 우편물로, 특급특송물품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 ② 간이신고 특송물품, ③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으로 구분해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자들은 수입요건 내지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인 국내 판매 목적의 물품 등을 국제우편의 현장면세 또는 특급특송의 목록통관을 통해 신고 없이 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관세법」은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통관을 적정하게 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의 일종으로 그 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 벌금 등의 관세형벌을 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법」은 제282조를 통해 제269조 제2항에서 정한 주형에 더해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무신고 수입물품을 필요적⁵⁾으로 몰수하거나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국내도매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부가형⁶⁾을 정하고 있다.

앞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6조 제11호 및 제39조에 따라 부과징 방식으로 관세 채무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몰수하거나 몰수에 갈음해 추징하는 밀수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입의 의제⁷⁾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40조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물품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및 그에 따른 각 호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등의 경우 임의적으로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이다.

7) 의제의 사전적 의미는 본질이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 「관세법」 제240조 제1항 각 호 - 수입의 의제 물품 ●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정된 물품

수입의 의제 물품 중 제3호의 몰수된 물품, 제4호의 제269조 등에 해당해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제6호의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해 추정된 물품이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물품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비록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입된 것은 아니지만 몰수를 통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거나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몰수품 상당 금액이 추정⁸⁾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수입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의 수입 의제 조항이 적용되려면 법문에 기재된 그대로 **몰수된** 물품이거나 몰수를 갈음하여 **추정된** 물품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밀수입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물품은 몰수 갈음 추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및 제282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하되, 원고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에 비해 거액의 추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 및 몰수·추정의 선고를 유예했다.

우리 「형법」은 제59조를 통해 유죄가 인정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고,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게 된다(「형법」 제60조·제61조).

원고는 이러한 「형법」에서 정한 선고 유예의 실효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선고 유예된 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음을 주된 위법 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8)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등이 포함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별도의 부과지를 통해 관세 등을 징수한다면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의 선고 유예로 인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몰수를 갈음한 추징금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⁹⁾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의 수입 의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한 시점에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정리하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몰수를 갈음한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 언제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밀수품 과세와 관련한 실무상 고려사항

세관장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즉시 고발한다(「관세법」 제311조·제312조·제316조·제318조).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몰수 갈음 추징금 등이 납부되기 전이라면 제척기간 이내에 밀수품에 관한 누락 세액의 부과는 적법하다. 하지만 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를 포함해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형사소송 결과를 고려해 밀수품에 관한 세액의 합리적인 부과 시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몰수·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세액 징수 없이 즉시 고발을 했더라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과 같이 선고유예 등의 사유로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수년이 지나 부과고지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 따라 불어난 납세불성실 가산세로 인한 조세 저항이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는 ① 무혐의 종결, ② 통고처분, ③ 즉시 고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무혐의 종결의 경우 형사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누락 세액을 즉시 징수하고, ② 통고처분의 경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하면 관련 밀수품은 「관세법」 제240조 수입 의제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는 고민할 부분이 없다.

그러나 ③ 즉시 고발의 경우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거나 종결할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의 유형과 공소제기 이후 무죄, 유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형사소송 판결의 내용에 따라 몰수·추징의 확정 내지 집행 유무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몰수·추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수품에 관한 세액의 부과 여부나 그 부과 시점을 정하기 쉽지 않다.

9)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법」 기본통칙 제240-0-1조는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이 결정되었다 할 지라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한 바 있다.

현재 세관 범칙조사부서는 고발 이후 진행되는 검사의 처분이나 형사소송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불기소 내지 선고유예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지연·누락하거나 부과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해 조세채권을 상실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례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1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제1호 라목을 통해 제313조¹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특례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몰수 갈음 추징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는 안이다.

이와 다른 단순한 방법으로, 고발하기 전 일단 관세 등을 부과한 뒤 「관세법」 제240조의 수입 의제 적용이 가능한 몰수·추징된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 그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형사 재판에서 누락 세액의 납부는 양형의 참작 사유로서 벌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몰수·추징을 하지 않아 관세 등을 부과하지할 때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가산세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세법」상 몰수·추징된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10) 「관세법」 제313조 제1항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식품저장 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검토

이 희 영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의식주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식(食)과 관련한 저장의 역사는 불을 발견한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조하거나 굽기, 찌기, 훈제, 염장, 발효 등의 기본적인 저장법은 선사시대 기술을 이어 받아 19세기 초반까지 저장기술의 주를 이뤘다. 특히 각지의 풍토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으며, 지역의 주요 식량원과 결합해 식생활 형태가 다양해졌다. 19세기 이후에는 프랑스의 니콜라스 아페르에 의해 통조림이 고안됐으며, 통조림 저장법은 계속 개량돼 주석을 사용한 통조림이 제조됐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형태에 가까운 열풍건조 방식이 확립됐으며 가스압축식 냉동장치가 발명되면서 저장기술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뤄졌다.

20세기에는 급속냉동 기술이 해동기술과 더불어 발전했고, 동결건조법과 사과의 C.A. 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조절공기 저장)을 실시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을 발달로 플라스틱제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식품 포장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앞으로는 미래 대체식품의 형태에 맞춰 가공 및 저장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분야에서 ‘저장’이나 ‘가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해 많이 쓰이는데,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식품에서 저장은 식품 그대로 또는 적절히 가공해 보존하는 것으로 식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줘 저장성을 부여하거나 영양이나 기호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장과 가공은 식품의 저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식품의 저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무엇일까? 식품의 저장 중 수분, 미생물, 효소, 산소에 영향을 받아 품질이나 특성이 변화된다. 이 인자들이 어떻게 식품 저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수분

식품 중에 수분은 두 가지로 나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수와 식품 성분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결합수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유수는 미생물의 생육 및 효소 작용에 이용되며, 대기압 하에서 0℃ 이하에서 얼고, 100℃ 이상으로 가열 시 기화해 제거될 수 있다. 즉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식품의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분(자유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건조를 통해 식품 중 자유수를 제거하거나, 냉동을 통해 자유수를 얼려 미생물이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 내 수분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분활성(water activity, a_w)이라는 지표가 있다. 수분활성 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수분활성 값이 클수록 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수분활성} = \text{식품 중의 물의 수증기압} / \text{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수분활성이 중요한 이유로 첫 번째 **미생물 성장**과 관련돼 있다. 식품의 수분활성이 0.6 이하라면 대부분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는 생장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품질과 저장성**에 있어서 활용이다. 건조식품이 수분활성이 낮아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듯이 식품의 수분활성이 낮을수록 식품의 품질이 오래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화학 반응**으로 수분이 많으면 반응이 촉진될 수 있고, 수분이 적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수분활성 값은 식품의 안정성이나 품질, 미생물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분활성 값에 따른 물질의 변화 ●

수분활성 값 0.9 이상 : 미생물 생육환경 제공, 부패나 변질 발생
 수분활성 값 0.7 ~ 0.9 : 효모, 곰팡이 생육 가능, 대부분 세균 생육 불가
 수분활성 값 0.6 이하 : 대부분 미생물 생육 불가, 식품 저장성 향상

2. 미생물

식품에서 미생물은 발효 등에 이용되는 유익한 균과 부패 등에 관여하는 유해한 균으로 크게 나뉜다. 장기 저장을 위해 식품 내 존재하는 유해한 균의 생육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식품 미생물의 생육 조건은 매우 민감하므로,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어해 저장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미생물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수분이다. 이 외에도 생육 온도, pH, 산소, 자외선, 삼투압 등이 있으며, 이를 조절해 생육을 제어할 수 있다.

3. 효소

식품 내 존재하는 효소가 화학반응의 촉매제로 작용한 대표적인 예가 과일의 갈변화 반응이다.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 pH, 기질 특이성, 효소의 농도, 효소의 작용의 촉진제(금속이온 등) 또는 억제제 등이 있다. 따라서 식품 내 화학반응에 관여하다보니, 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저해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다.

4. 산소

산소는 비타민, 색소 등 식품 내 존재하는 성분들과 반응해 영양성분 및 품질 변화를 일으킨다. 저장 시 산소의 양을 조절하거나 제거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 식품 저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살펴봤다. 이 인자들을 제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저장의 원리이며, 미생물을 제어하고 효소작용 및 산소작용을 억제하므로 식품 저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저장과 관련해 관세율표상에서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저장’은 품목분류표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HS 해설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HS 해설서 총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저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저장의 방식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류 총설	위의 (2)항에 열거된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그 밖에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 에는 제0510호에 분류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에 분류한다.
제3류 총설	이 류에는 식용 어란(魚卵 : roe)과 어백(魚白 : milt)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조제·저장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나,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 저장 처리된 것 으로 한정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저장 처리된 식용 어란과 어백이나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로서 즉시 먹는 데 적합한 것은 제1604호로 분류된다. ... <중략> ... 또한 이 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이라도 이 류로 분류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예 : 훈제 연어 통조림). 그러나 밀폐용기에 든 것 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16류로 분류한다.
제7류 총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한 것 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0류).
제8류 총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찌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 처리한 것(예 : 야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 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제16류 총설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만을 기본 재료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어류 등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으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저장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이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제2006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끓는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 하여 조제한다.
제2008호 해설서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 생강·안젤리카(angelica)·암·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 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제2009호 해설서	(e) 살균[sterilisation(발효방지를 위하여 살균)] :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prolonged or 'flash')·전극을 부착시킨 기계에서 전기 살균법·여과에 의한 살균법·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압력 하에서의 저장법 ·냉동법·화학 살균법(예 : 이산화황·안식향산나트륨)·자외선이나 이온 교환체로 처리하는 방법.

HS 해설서에서는 저장 방법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다. 제3류 총설에는 통조림과 같은 밀폐 용기에 담은 물품은 종류에 따라 제3류 또는 제16류에 분류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2006호 및 제2008호에서는 당 시럽에 저장해 삼투압을 통한 식품 내 수분을 제거한 물품의 분류에 대해, 제2009호에서는 미생물 억제에 위한 여러 살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품목분류표 체계에서 신선한 것과 함께 냉장, 냉동, 건조한 것이 같은 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제2류 육류 및 제3류 어류의 경우 염장, 염수장 및 훈제한 것까지 함께 분류하고 있다. 제7류 채소나 제8류 과일의 경우 일시 보존처리한 것(예 : 아황산가스·염수·유황 수나 그 밖의 저장용 액) 또한 신선한 것과 같은 류에 분류된다.

이 외에 당으로 보존처리하거나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조제한 것으로 봐 제20류에 분류되며, 살균한 과실 펄프의 경우 제2008호에 예시하고 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도 저장과 관련된 물품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적용 기준
2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한 쇠고기[설육(屑肉)을 포함한다]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0210호에 분류한다.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성게젓·명란젓의 경우에는 100분의 8)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0305호, 제0306호 및 제0307호에 분류한다.
9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번호	품 명	적용 기준
24	식초 또는 초산 (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
27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일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 2) 외관상 과육이 수축 없이 원형 상태를 거의 유지할 것 3)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스며들었을 것 4) 과육 내부·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 및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를 것 나. 삼투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비고 이 호에서 '설탕'이란 설탕과 전화당 혼합물이나 설탕과 포도당 혼합물을 포함하되, 꿀 등 그 밖의 당류는 제외한다.

지금까지 식품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요인을 제어하는 방법, 품목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유장분말 분류 사례 - 2024년도 8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유청은 우유로 치즈를 만들 때 카제인과 분리되는 유당, 유청 단백, 광물질 등을 말하며, 스위트 유청 분말은 액상 유청에서 분무 건조 기술로 생산된다. 주요 영양 성분은 유당, 우유 단백질 및 미네랄이다. 유청 분말의 이러한 영양 성분은 어린 동물을 위한 사료 생산에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청 단백질은 액상 유청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단백 성분을 제거해 단백질이 일정량 이상 함유되도록 만든 것이다. 유장 단백질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물의 젖에 함유된 수용성 단백질·유즙 가운데 산의 작용으로 치즈 형태로 농축되는 카제인 성분을 제외한 단백질이다.

유장 단백질에는 알부민· α -락트알부민·글로불린· β -락토글로불린 등이 포함돼 있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작년 12월 열린 유청단백질포럼에 참석한 배제대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교수는 최고 단백질이 유장 단백질이라고 말하며 유장 단백질의 이점을 발표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장 단백질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첫째, 유장 단백질은 류신 등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이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해 반드시 음식 등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 콩·밀 등 식물성 식품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하지만, 유장 단백질의 주 공급원인 우유를 포함해 달걀·육류·생선 등 동물성 식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돼 있다.

둘째, 유장 단백질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유장 단백질의 체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생물가(BV)는 104점으로 1위며, 다음은 달걀(100점)·소고기(80점)·케이스(77점)·콩(74점) 순이다. 생물가가 높을수록 체내에서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흡수된다는 의미다.

셋째, 유장 단백질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다량 함유돼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유청 단백질의 류신 함량은 14%이고, 계란 단백질은 9%, 고기 단백질은 8%, 콩 단백질은 8%, 콜라겐은 2%다.

넷째, 유장 단백질은 BCAA(분지 사슬 아미노산, Branched Chain Amino Acids)가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기도 하다. 필수 아미노산 중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세 가지 있는데 류신·아이소류신·발린이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BCAA라 한다. BCAA는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 있다.

이처럼 유장 단백질은 건강 관리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다.

단,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유장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유장 단백질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관찰되는데, 가스나 복부팽만감,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저유당 또는 무유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 유장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유장 단백질로 신장 기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번 호에서는 유장분말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미황색계 분말상의 유장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세번 및 분류이유

- 결정 세번 : 제0404.10-1019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0404호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404.10-1019호에는 그 밖의 ‘유장분말’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乳漿 : 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은 밀크의 천연 구성 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용의 유장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4.10-1019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류	(제4류) 낙농품 … <중략> …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호	(제0404호)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후략>
HSK	(제0404.10 소호)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0404.101 소호) 유장분말, (제0404.1011 소호) 사료용, (제0404.10-1019 소호) 기타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0404.10-1019호
품명	Whey powder; 유청분말1
물품 설명	- 미황색계 분말상의 유장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 이미지



기타 완구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완구’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B.C 2000년경의 이집트의 유물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도 동물을 본떠 만들거나, 소리가 나는 것, 인형, 목마 등 현대와 비슷한 여러 가지 완구가 있던 것으로 봐 완구의 역사가 꽤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장난감이 전 세계에 값싸게 공급되는 데에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장난감은 미국, 일본, 서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주로 생산됐고 선진국의 일부 업체들은 대한민국, 대만, 홍콩 등에 하청업체를 두고 장난감을 생산했다. 그래서 장난감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소유물이었다. 1990년대에 중국이 경제개방을 하면서 선진국들의 장난감 제작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MADE IN CHINA’라는 이름으로 장난감을 생산했으며, 이제는 전 세계 장난감 시장에 중국산 장난감이 대다수를 이루게 됐다.

요즘에는 유튜브의 영향으로 슬라임 등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롤상의 테이프 1개와 볼 3개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하는 제3919.10-0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D) 그 밖의 완구 :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서는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을 이 류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테이프를 이용해 볼에 감아 공을 만들고 햇빛에 비춰 보면서 색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제391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테이프의 기능’을 하지 않는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봤다.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3919.10-0000 (FCN1 0%)	Other toys	9503.00-3919 (FCN1 2.6%)

이상기후 현상, AI로 대비한다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오늘날 극한 호우와 폭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기상 관측선 1호’를 운영 중이다.

기상 관측선 1호에서 풍선을 하늘 위로 날리면 그 풍선은 고도 30km에서 기압이나 습도와 같은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이 풍선 끝에는 기상 관측용 센서가 부착돼 있다. 기상 관측선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관측하면서 때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일본 나가사키까지 주변 해역을 돌아다니며 고층·해상·해양·대기 환경을 입체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이 관측선은 바다로 나가 풍선을 띄워 대기 환경뿐 아니라 태풍의 진로 등을 예측하며, 표류 부이를 바다에 띄워 해양 환경을 파악할 수 있고, 해수수온염분측정기(CTD)로 수온·염분까지 측정·조사하고 있다.

기상 관측선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상 정보 자료와 동네 예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음성 및 텍스트 기반의 기상AI 검색기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풍의 중심·경로를 예측하는 데 AI를 활용한 모델이 사용되기도 한다. 태풍의 눈을 예상하는 게 관건인데 기상청에서는 현재 AI 예측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예보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관측선 관계자는 더욱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기상 관측선 단 1척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상 관측선 2호 등 대형 관측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율표에서는 대기 중에 띄워 보내는 풍선 즉 기구(balloons)와 같은 경우 제8801호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에 분류된다.

제8801호 해설서에서는 “(I) 기구·비행선(balloons and dirigible) … <중략> … 이 호에는 항공학이나 기상학에 사용하는 다음 형식의 기구를 포함한다. (1) 발신용 기구(sounding balloon) … <중략> … (2) 파일럿 기구(pilot balloon). 이러한 것은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방출한다. 보통 중량은 50g부터 100g까지이다”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다.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12호_2024.12.23.

최신개정법령

고시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입법예고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5호, 2024. 12. 16.)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가. 대외무역법 개정('24.8.21일 시행)으로 UN 안보리 결의 상의 간접수출 통제 의무가 국내법 상에 명시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을 반영함.

나. 또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따라, 북한 전용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고체추진미사일 분야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UN 안보리 결의 상의 간접수출(경유·환적·중개) 통제 의무를 반영하여, '수출·수입' 통제 외에 '경유·환적·중개' 통제를 추가하고, 별지의 '수출·수입 허가 신청서'를 경유·환적·중개 신청까지 포괄하는 '허가 신청서'로 수정 (본문 전체 및 별지 4, 5)

나.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변동사항 반영 (본문 제26조 및 별표 2의2, 4, 8, 9)

다. 북한 전용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고체추진미사일 분야 품목 15개 추가(별표 6)

[개정 내용 별첨]

부 칙<제2024-195호, 2024.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내용 및 신규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 2024. 12. 19.)

2024년 5월 3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4.79

라. 부과기간 : 2024. 12. 19. ~ 2025. 4. 18.(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0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공고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20호, 2024.12.18.)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나. 신청일자 : 2024년 10월 14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 조사범위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text{Na}_2\text{S}_2\text{O}_4$ 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 차아황산소다의 농도는 불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2831.10.1000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

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 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여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 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를 통해 무역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질문서, 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5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9호, 2024.12.16.)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조사범위 :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 관세품목분류 : HSK 4410.11.1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태국) METRO INDUSTRIAL PARK CO., LTD., METRO PARTICLE CO., LTD., 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 VANACHAI GROUP PUBLIC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 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여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 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를 통해 무역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질문서, 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3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3

*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의 무역구제 > 무역구제 조사진행 > 반덤핑조사 참조

입법예고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33호, 2024.12.19.)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 국제 수출통제 공조 추진

2. 주요 내용

- ☐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별표2의2)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 상세 내용 : www.custra.com 참조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6호, '23.12.18.)

2. 개정 사유

- 선박연료공급선에 2가지로 적용되는 이용금지 제재를 감경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여 규제 완화(20일 및 30일 ⇨ 20일)
- 업무정지 제재에 대한 경고 횟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규정된 3차 초과 제재 대해서도 3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업무절차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본 고시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
 - 「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을 개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업종별 고시에 대해 기존에는 일부만 적시
 - 기존에 누락된 고시명들을 모두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
- 용어정비(제3조, 제4조제1항, 제10조)
 - (제3조: 정의) 제10호 구명뗏목정비업의 정의에서 '의장품' 대신 '장치된 설비'로 개정
 - (제4조: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1항 본문, 'FAX'를 '팩스'로 개정
 - (제10조: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갱신'으로 개정
 - (제12조: 업무정지 등) 제2항제3호 본문내 '1년간'을 '1년 이내에', 제7항 본문내 '절사'를 '버림'으로 개정
- 근거규정 정비 및 신고기한 등 명확화(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
 - (제4조제5항) ①등록사항 변동신고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반영, ②변동신고의 기한을 '지체없이'로 명시하여 근거법령과 일치
 -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5항에서 '제231조제6항'으로 개정

- (제10조제1항) ①갱신신청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반영, ②사전 통지의무 내용(「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5항)을 본 고시에 삽입, ③갱신 처리 시 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여 절차 명확화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3항에서 '제231조제4항'으로 개정

□ 규제 완화(제11조)

- (제11조제1항) 부족적재와 미적재로 적발된 급유선의 업무정지 제재를 20일로 일원화*하여 규제 완화

* 기존에는 부족적재의 경우 20일, 미적재의 경우 30일로 업무정지 적용

□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12조)

- (제12조제2항)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 횟수 산정 방법 구체화*

* 최종 적발건의 경고처분을 포함 경고 3회시 업무정지 1회 적용

- (제12조제3항) 업무정지의 3차 초과시(4차, 5차 등) 3차 제재와 동일하게 30일로 규정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시행일자 : 2024. 12. 00.

6. 연락처 : 관세국경감시과 박기현 주무관(042-481-7888, parkgoldencustoms@korea.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2024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2024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 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